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동대문구 이문동 256-136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 검토 신청 접수되어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(2023. 10. 26.)」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1일
동대문구청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

가. 제한지역

구분	위치	면적	비고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	이문동 256-136번지 일대	34,702㎡	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제한근거 및 사유

- 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제3호
- 사유 : 도시·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

다. 제한기간 :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(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)

※ 단,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

라.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

1) 제한대상

- 가) 건축물의 건축
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 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 건축물로의 전환
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나) 토지의 분할

2) 제한제외 대상

- 가)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나)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다)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2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3. 안내사항 :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(☎02-2127-475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